

<의안번호 제2007 - 9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3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4. 2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4. 24.

2. 제안이유

- 낙동강 수계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적기영농 실현
-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절감 효과 거양

3.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 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면적	예정금액(추정가액)	비고
취득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60-1번지	건물	264	80,000	농기계임대사업보관창고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0-1번지	토지	1,229	93,000	농기계임대사업보관창고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 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면적	예정금액 (추정가액)	비고
처분		해당없음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예산조치 : 군비부담금 제1회 추경 편성

5. 검토의견

- 동 사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요구가 계속증대 됨에 따른 수요충족과 낙동강 수계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적기 영농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취득시 시군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1,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
-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동 사업이 낙동강 수계기금(1,460,195천원)중 2007년도 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일부사업으로서 사전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2006. 12. 27일 신청하여 2007. 3. 20일

승인됨에 따라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제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음.

※ 2007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

구 분	주민지원사업 및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1,460,195	
산림환경과	환경생태학교 학습관 설치사업 67.4m ²	200,000	
전략사업추진단	장학기금 조성사업 기금적립 1식	300,000	
농정과	농기계임대사업	666,000	
거창읍, 남상·남하·신원면	안길, 농로 정비, 진입로 포장 등	294,195	

- 동 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675,900천원 (낙동강수계기금 666,000천원, 도비 4,950천원, 군비 4,950천원)으로서
 - 세부사업계획은 토지취득(327평) 93,000천원, 보관창고신축(80평) 100,000천원, 농기계구입(25종 44대) 382,900천원, 기타 운영장비 및 부대시설(3종 6대) 100,000천원으로 파악되었음.
-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과 병행하여 기존 보유한 트랙터 등 37종 73대로 농기계 무상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 고가의 농기계를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이 구입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과
 - 많은 영세한 농민의 요청과 군수 공약사업으로 인하여 금번에 농기계 25종 44대를 추가로 구입 확대하면서 동 사업을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담시켜 꼭 필요한 농업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농업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